

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

세제 변화의 영향

정원석 연구위원

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이하 'ISA')의 만기 이전 일부 금액의 중도인출이 허용되고 서민형 ISA의 세제 혜택 한도가 상향 조정됨. 중도인출 허용은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여 투자자의 ISA 가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 또한 서민형 ISA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확대는 중산층·서민 계층에 추가적인 ISA 가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. 따라서 단기·중기 비과세 금융상품 투자를 원하는 금융소비자는 보험계약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성보험보다는 ISA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것으로 보임. 보험회사는 이러한 시장상황의 변화를 고려한 마케팅 전략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

■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이하 'ISA')의 세제혜택 한도가 상향 조정되고 납입금 중도인출이 허용되었음

- 연소득 5,000만 원(종합소득금액 3,500만 원) 이하 근로자(근로자 이외 종합소득세 대상자)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형·농어민 ISA의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
 - 단, 소득조건이 없는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으로 종전과 동일함
- ISA의 납입원금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허용되었음
 - 기존에는 5년(서민형의 경우 3년) 이내 인출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으나, 올해부터는 납입원금 이하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

■ 이러한 제도 변화는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ISA에 가입하지 못하는 중산층·서민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와 중도인출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임¹⁾

- 서민형 ISA의 경우 비과세 혜택 한도 상향 조정으로 ISA 납입유인이 확대됨
 - 근로소득자 중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비율은 80%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추가적인

1) 국회예산정책처(2017), “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 쟁점”

ISA 납입유인을 얻게 됨²⁾

- 또한 중도인출 허용으로 일정기간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ISA 가입을 결정하지 못한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〈표 1〉 ISA 제도변화 개요

구분		2017년 이전	2018년 이후	비고
가입조건		소득이 있는 자	소득이 있는 자	동일
연간 납입액 한도		2,000만 원	2,000만 원	동일
금융소득 비과세 한도	일반형	200만 원	200만 원	동일
	서민형	250만 원	400만 원	150만 원 증가
	농어민	200만 원	400만 원	200만 원 증가
비과세 혜택을 위한 가입기간	일반형	5년	5년	동일
	서민형	3년	3년	동일
	농어민	5년	3년	2년 단축
중도인출		불가능	가능	원금인출 가능

- 이러한 ISA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저축성보험에 비해 ISA의 장기 저축수단으로서의 매력도를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

- 저축성보험의 연간 납입액 한도가 1,800만 원(월 150만 원)인 데 비해 ISA의 한도는 2,000만 원임
 -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5년 이상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,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,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간 계좌유지 기간이 3~5년에 불과함
-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은 일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나 ISA는 중도인출이 가능함³⁾
 -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은 일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5년 이내 해지 시 중도 해지 수수료 등으로 인해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음

2) 국세통계연보 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산출

3) 유니버설보험 등 일부 상품은 중도인출이 가능함

〈표 2〉 ISA와 저축성 보험 비교

구분		ISA	저축성 보험	비고
가입조건		소득이 있는 자	제한 없음	ISA는 소득조건이 있음
연간 납입액 한도		2,000만 원	1,800만 원 (월 150만 원)	ISA가 연 200만 원 높음 (단, ISA는 5년만 납입)
금융소득 비과세 한도	일반형	200만 원	없음	저축성보험은 한도 없음 ISA는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에 9.9% 분리과세
	서민형	400만 원		
	농어민	400만 원		
비과세 혜택을 위한 가입 기간	일반형	5년	10년 이상	ISA가 5~7년 짧음
	서민형	3년		
	농어민	3년		
중도인출		가능	불가능	원금인출 가능

■ ISA의 세제혜택 확대는 중산층·서민의 금융상품 투자에 어느 정도는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- 특히 금융상품으로서 근본적인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ISA의 수익률이 제고되었음
 - 일임형 ISA의 최근 1년간 평균 수익률은 8.1%임⁴⁾
- 따라서 ISA의 수익률 제고와 비과세 한도 확대 그리고 중도인출 허용 등의 제도 변화는 금융상품으로서 ISA의 매력도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
- 단, 최대 납입금액이 1년에 2,000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이기 때문에 장기저축 및 자산가의 자산운용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

■ ISA와 유사하게 비과세 혜택을 주요 장점으로 삼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경쟁력이 다소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- ISA의 세제혜택은 확대된 반면 저축성보험은 2017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 150만 원으로 축소되었고 일부 중도인출도 불가능함
-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의 장점(금융소득 비과세 한도가 없고 납입기간 제한이 없음)을 부각시켜 장기저축 및 연금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

kiri

4) ISA 다모아에 2017.11.30 공시된 일임형 ISA 상품별 수익률의 단순 평균값임